

해당하는 경우에는 전문기관의 지정을 취소하여야 하며, 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.

1.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
2. 제58조제3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된 경우
3. (생략)

② 특허청장은 제1항에 따라 전문기관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업무정지를 명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.

③ (생략)

제217조(특허출원 등에 관한 서류 등의 반출 및 감정 등의 금지) ① 특허출원·심사·특허취소 신청·심판·재심에 관한 서류 또는 특허원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외부로 반출할 수 있다.

1. 제58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선행기술의 조사 등을

등록-----

-----등록-----

1. -----
-----등록-----

2. 제58조제4항에-----등록기준에-----

3. (현행과 같음)

② -----
-----등록-----

③ (현행과 같음)

제217조(특허출원 등에 관한 서류 등의 반출 및 감정 등의 금지) ① -----

1. -----제3항-----

<p>위하여 특허출원 또는 심사에 관한 서류를 반출하는 경우</p> <p>2.·3. (생략)</p> <p>② (생략)</p> <p>제226조의2(전문기관 등의 임직 원에 대한 공무원 의제) <u>제58 조제1항에</u> 따른 전문기관 또는 특허문서 전자화기관의 임직원 이거나 임직원이었던 사람은 제226조를 적용하는 경우에는 특허청 소속 직원 또는 직원이 었던 사람으로 본다.</p>	<p>----- -----</p> <p>2.·3. (현행과 같음)</p> <p>② (현행과 같음)</p> <p>제226조의2(전문기관 등의 임직 원에 대한 공무원 의제) <u>제58 조제2항에</u>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</p>
--	---